

영등포구의회  
제165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2. 2. 23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103호로 2012년 2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영등포구청 위치인 “당산동3가 385-1번지”를 “당산로 123”으로 변경(안 제2조)

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순화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로명주소법」 제21조  
「지방자치법」 제6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제명을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”로 띄어쓰기를 함.
  - 안 제2조에 영등포구청의 위치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-1번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”으로 변경함.
  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.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구청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표시를 통일화·선진화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구민의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도로명주소법

제21조(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5.17, 2009.4.1>

1. 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,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
2. 각종 인·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
3.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
4.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
5.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
6.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
7.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

## 2 지방자치법

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면·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(行政面)·행정동(行政洞)을 말한다. <개정 2009.4.1>

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